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퇴직 입학사정관 취업제한 강화 등〉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1677호)

2024. 8.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 목 차 】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 부
2. 제출연월일 : 2024. 7. 12.
3. 회부연월일 : 2024. 7.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 범위 확대를 통해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퇴직한 날 이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입학사정관이 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에 교습소 설립 및 과외교습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현재 입학사정관이 퇴직 이후 3년 이내 학원 또는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퇴직 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 범위에 교습소 및 과외 교습을 추가하고는 한편,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4조의3(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 <u>입학사정관은 퇴직한 날 이후 3년 동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을 할 수 없으며,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5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신설></u>	제34조의3(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 <u>입학사정관은 퇴직한 날 이후 3년 동안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u> ----- ----- ----- ----- ----- ----- <u>「사립학교법」 제53조의4</u> ----- ----- -----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u><신 설></u>	<u>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는 행위</u>
<u><신 설></u>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에 취업(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u><신 설></u>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교습소를 설립하는 행위
<u><신 설></u>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
<u><신 설></u>	5.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하는 행위
제64조(벌칙)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u><신 설></u>	제64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현행과 같음) 2. 제34조의3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한 행위(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 학원을 설립한 경우로 한정한다)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에 취업(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행위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교습소를 설립한 행위(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교습소를 설립한 경우로 한정한다)

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한 행위(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과외교습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

2. ~ 4. (생략)	<u>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과외교습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u> <u>마.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한 행위</u> 3. ~ 5.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	---

대입 전형¹⁾²⁾ 중 하나인 학생부종합전형은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성적 외에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 학교생활기록³⁾, 인성

1) 모집 시기에 따라 수시모집·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으로 구분되는데, 수시모집 기간에는 주로 학생부 위주 전형과 논술 위주 전형, 실기 위주 전형이 운영되며, 정시모집 기간에는 수능 위주 전형과 실기 위주 전형이 대체로 운영됨

< 표준 대입전형 체계 >

전형 유형	주요 전형요소
학생부 위주	· (학생부종합) 교과·비교과
논술 위주	· (학생부교과) 교과 중심
실기/실적 위주	· 논술(대학별고사) 등
수능 위주	· 실기 등
	·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 학생부위주 전형유형은 학생부를 주된 전형요소로 하는 전형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됨.

- 학생부교과 전형: 학생부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전형
- 학생부종합 전형: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학생부를 중심으로 학생을 종합평가하는 전형 (자료: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대교협)

2)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할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의 방법과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입학전형자료) ① 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41조(학생의 선발일정)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수시모집·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으로 구분하여 선발할 수 있다.

· 능력 · 소질 · 지도성 및 발전가능성과 역경극복 경험 등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입학전형자료로 생산 · 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이를 위하여 각 대학에서는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교원 또는 직원인 입학사정관을 두고 있음⁴⁾.

현재 입학사정관 운영현황을 보면 185개 대학 총 9,341명(전임 사정관 1,259명, 위촉사정관 8,082명)이며, 전임사정관 중 75.4%(949명)가 정규직임.

< 입학사정관 현황('24년 대학정보공시) >

('23. 10월 기준)

대학수	입학사정관(명)		
	전임사정관(A)	위촉사정관(B)	총계(A+B)
185개교	1,259 (949/75.4%)	8,082	9,341
비 고	채용사정관 976 (676/60.5%) 교수사정관 166 (158) 전환사정관 117 (115)		

주) 전임사정관 괄호안은 정규직 인원 및 비율

- 채용사정관: 대학이 전임으로 채용한 입학사정관
- 교수사정관: 입학사정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받고 상시 학생선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대학이 입학사정관 보직을 부여해 책임시수를 감면하고 보직수당 등을 지급하는 교수
- 전환사정관: 입학사정관의 업무를 위하여 본교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 사람
- 위촉사정관: 입학사정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총장에 의해 위촉된 자를 말하며, 내부위촉사정관과 외부위촉사정관으로 구분됨.

3) 제25조(학교생활기록)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 · 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5. 교과학습 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제34조의2(입학사정관 등)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성적 외에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 학교생활기록, 인성 · 능력 · 소질 · 지도성 및 발전가능성과 역경극복 경험 등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입학전형자료로 생산 · 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교원 또는 직원(이하 “입학사정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학의 학생선발이 초·중등교육의 정상적 운영과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 및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입학사정관의 채용 및 운영을 권장할 수 있으며, 국가는 입학사정관의 채용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대입전형에 있어서 입학사정관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법에서는 회피·배제 제도,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와 함께 원칙적으로(예외적 승인가능) 입학사정관의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 및 입시상담 전문업체 취업 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⁵⁾.

그러나, 퇴직 입학사정관의 학원 등 취업 제한의 경우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 확보가 어렵고, 학원 외에도 교습소 및 과외교습 등을 통한 입시상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퇴직 입학사정관의 취업제한 범위를 확대(교습소 및 과외교습)하면서, 취업제한 의무 위반시 벌칙 규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려는 것임.

5) 제34조의2(입학사정관 등)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공정한 학생선발을 위하여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④ 입학사정관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등 응시한 학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사회통념상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의 선발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34조의3(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 입학사정관은 퇴직한 날 이후 3년 동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을 할 수 없으며,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5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입학사정관 및 이를 감독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수뢰·사전수뢰, 제삼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사후수뢰, 알선수뢰

< 개정안 주요내용 >

구분	현 행	개정안
취업 등 제한	▶ 학원 및 입시상담 전문업체 - 설립 또는 취업	▶ 학원 및 입시상담 전문업체 - 설립 또는 취업 ▶ 교습소 설립, 과외교습 제한
벌 칙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 칙		▶ 공포 후 1년 시행

개정안은 입학사정관을 통한 대입전형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그 개정취지에 공감할 수 있으며 조문별 검토사항은 아래와 같음.

첫째, 취업등 제한범위를 확대하는 안 제34조의3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에 따라 학원과 교습소를 구분하고 있고 과외교습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⁶⁾, 현행 법에서 퇴직 입학사정관의 학원 및 입시상담 전문업체에 대한 취업 등 제한만 규정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타당함⁷⁾.

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단서 생략)

2. “**교습소**”란 제4조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4.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서 생략)

7) 그밖에 학원의 설립 및 취업 제한과 관련하여, 취업의 범위에 “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학원의 경우 설립 및 취업(일반적으로 사용자-근로자 관계) 외에도 임원 등 구성원이 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

다만, 입학사정관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근로의 권리 등 기본권 제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⁸⁾,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자체에 대한 논의는 별론으로, 퇴직후 취업등 제한 대상에 학원과 교습소를 구분할 이유가 없고 과외교습을 허용하는 경우 학원에 대한 제한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시켜 규율할 필요성이 인정됨.

둘째, 입학사정관의 취업등 제한을 위반시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안 제64조제3항제2호는, 현재 취업제한 등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수단이 없음에 따라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제재규정을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

유사한 입법례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일정한 범위(재산등록의 무자 등)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경우 퇴직 후 3년간 취업 심사대상기관에 취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재규정을 두고 있음⁹⁾.

8) 동일한 내용으로 제21대 국회에서 제출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의안번호 제2113554호)」에 대한 의견 조희(서울대, 가톨릭대)

9)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 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1~12. (생략)

②~⑨ (생략)

제29조(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사람

< 유사 입법례(공직자윤리법) >

근거 법률		「공직자윤리법」(제17조)
내용	대상	▶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재산등록의무자 등 일정범위)
	제한 기간	▶ 퇴직 후 3년
	제한 내용	▶ 사기업체, 법무·회계·세무 법인 등 취업 제한
	벌칙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또한, 행위와 벌칙의 비교 측면에서는 무등록(신고)·허위등록(신고) 학원 또는 교습소의 설립·운영, 무신고·허위신고 과외교습 등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¹⁰⁾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다만, 개정안 제64조제3항제2호의 가목, 다목, 라목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 학원 또는 교습소를 설립 하거나 과외교습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취업등이 제한되는 입학사정관의 학원 및 교습소의 설립·운영의 등록·신고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를 금지(결격사유)하면서 이는 「학원법」에 따라 규율하며¹¹⁾, 거짓이나 허위로 등록·신고한 경우는 동

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한 자
4.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② 제3조를 위반하여 과외교습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참고로, 동 개정안은 함께 제출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데, 학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취업등이 금지되는 입학사정관에 대해 결격사유를 정하고(안 제9조), 학원에 취업시킨 경우 등록을 말소하거나 교습의 정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을 정하고 있음(안 제17조).

법으로 규율하려는 것임¹²⁾).

셋째, 동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면서, 법 시행 전 퇴직한 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에 관하여는 신뢰보호 등을 위해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

< 개정안 부칙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에 퇴직한 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에 관하여는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포 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공포 후 시행까지 국민이나 시행기관에게 법률의 시행을 알리고 이를 준비

12) < 개정안에 따른 금지행위 및 제재규정 근거 >

금지 행위		제재규정
학원설립(제1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고등교육법(가목)
	등록금지	학원법(제1호)
학원에 취업(제2호)		고등교육법(나목)
교습소 설립(제3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고등교육법(다목)
	신고금지	학원법(제3호)
과외교습(제4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고등교육법(라목)
	신고금지	학원법(제4호)
입시상담업체 설립·취업(제5호)		고등교육법(마목)

주) 금지행위는 고등교육법 안 제34조의3, 학원법 안 제9조

제재규정은 고등교육법은 안 제64조제3항제2호, 학원법은 제22조제1항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려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시행일은 개정 당시의 입법정책적인 문제로 볼 수 있음.

다만, 동 개정안의 경우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을 제·개정하는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 정비의 필요성이 없고, 기존의 의무부과 규정의 미비한 점(행위태양 보완, 벌칙 신설)을 보완하는 내용이며, 제34조의3 신설 당시에도 공포 후 즉시 시행하였다는 점에서¹³⁾,

1년이라는 유예기간은 과도하게 긴 것으로 판단되며, 공포 후 즉시 시행하거나 필요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¹⁴⁾.

문 의 처
02)6788-5192

13) 법률 제11212호, 2012. 1. 26., 일부개정[시행 2012. 1. 26.]

14)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인 경우 일정기간 시행일을 유예하는 것이 가능하나, 개정안은 기존의 의무부과에 대해서 벌칙을 규정하며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므로 입법정책적인 판단으로 즉시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됨.

「헌법」 제53조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법령의 시행유예기간)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1] 법률 개정 관련 주요경과 및 입학사정관 현황

□ 법률 개정 관련 주요경과

1. (입학사정관 취업제한 제도 도입, '12.1월) 성적·점수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던 기존 대입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었으나, 이를 겨냥한 사교육 시장 활성화 등 부작용 발생
 - 특히, 입학사정관의 사교육 시장 진출 유혹이 높아 대입 공정성이 저해된 바,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퇴직 후 3년간 학원 등 사교육기관 취업을 금지함 (※ 「고등교육법」 제34조의3 개정 / 김세연 의원 대표발의안 대안가결)
2. (언론, 국회 지적) 취업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금지규정의 실효성 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 제기(※ 2019년 교육부 국정감사 / 서울신문(2015), 헤럴드경제(2019) 외 다수 언론)
3.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 '19.11월) 대입제도 전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수립·발표(교육부)하며, 방안의 과제 중 하나로 “퇴직 입학사정관 취업제한 위반시 제재규정 법제화”를 목표
4. (「고등교육법」 및 「학원법」 개정 추진, '20.2월~)
 - 개정계획 수립('20.2월) → 입법예고(1차) 및 관계부처 협의('20.3~4월)
 - 규제심사('20.6~9월) → 법제심사 및 재입법예고('20.10월~'21.11월)
 - 차관·국무회의('21.11.18. / 11.23.) → 국회제출('21.11.26.)
5. (감사원 감사) 퇴직 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 위반 제재 근거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법률 개정 추진 필요 지적
6. (「고등교육법」 및 「학원법」 개정 재추진, '24.5월~)
 - 개정계획 수립('24.5월) →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24.5월)
 - 규제심사('20.6월) → 법제심사('20.6~7월) → 차관·국무회의('24.7.4./ 7.9.)
 - 국회제출('24.7.12.)

[참고자료2] 학원의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 경과 여부 확인절차(계획)

□ 대학별 퇴직 입학사정관 명단을 취합하여 학원 및 교습소 관리주체인 시·도교육청에 공유, 시·도 교육청이 보유한 학원강사 등록 정보와 대조함으로써 취업 등 제한 위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

《 퇴직사정관 취업 등 제한 위반여부 확인업무 추진 절차(안) 》

개별 대학	▶ 입학사정관 채용 단계에서 퇴직 후 3년까지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징구하고 퇴직 3년 이내 퇴직 입학사정관 현황을 자체 관리
↓	
대교협	▶ 개별 대학 보유 퇴직 입학사정관 명단을 취합하여 시·도 교육청에 공유
↓	
시·도 교육청	▶ 기 보유 중인 학원강사 등록 정보와 대교협 공유 정보를 대조하여 퇴직 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 여부 점검

※ 필요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 개정 등 추진

[참고자료3] 입학사정관 현황 ('24년 대학정보공시 / 기준 : '23.10월 현황)

대 학 수	185개교		
전임사정관(A)	채용사정관	총원(명)	976
		정규직(명)	676
		정규직비율	69.3%
	교수사정관	총원(명)	166
		정규직(명)	158
		정규직비율	95.2%
	전환사정관	총원(명)	117
		정규직(명)	115
		정규직비율	98.3%
	소 계	총원(명)	1,259
		정규직(명)	949
		정규직비율	75.4%
위촉사정관(B)	총원(명)		8,082
총 계(A+B)	총원(명)		9,341

·채용사정관: 대학이 전임으로 채용한 입학사정관

·교수사정관: 입학사정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받고 상시 학생선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대학이 입학사정관 보직을 부여해 책임시수를 감면하고 보직수당 등을 지급하는 교수

·전환사정관: 입학사정관의 업무를 위하여 본교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 사람

·위촉사정관: 입학사정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총장에 의해 위촉된 자를 말하며, 내부위촉사정관과 외부위촉사정관으로 구분됨.

[참고자료4] 대입전형 연혁

- ☐ (1945~1968) 대학은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고, 정부는 **대입자격고사** 등 일부 대입전형요소 시행 또는 폐지

학년도	주요 내용
1945~1953	• 대학별 단독 시험제 ▶ (정부) 시험기일, 시험과목 일부 결정 / (출제·선발) 대학 자율
1954	• 대학입학 국가연합고사 및 대학별 고사 ▶ 연합고사를 거쳐 대입정원의 1.3배수까지 대학별 고사 응시자격 부여 ▶ 커닝 등 공정성 논란으로 폐지
1955~1961	• 대학별 단독 시험제
1962	•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제 ▶ 국가고사 성적+대학별고사+면접 등 총점으로 합격 결정 ▶ 국가고사 탈락으로 인한 대량 미달사태 발생, 일률적 시험으로 대학 자율성 저해 비판으로 도입 1년만에 제도 변경
1963	•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제 ▶ 국가고사(통과 시 입학자격 부여) → 대학별고사 실시 ▶ 자격고사가 학생에게 이중 부담, 고등학교가 자격고사 준비기관으로 전락, 대학자율성 무시 등 비판으로 폐지
1964~1968	• 대학별 단독시험제

- ☐ (1969~1980) 대학은 **대학별고사**를 실시하고, 정부는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고교 교과목 중심으로 대입 예비고사제도** 신설

학년도	주요 내용
1969~1980	• 대학입학예비고사와 대학별 본고사제 ▶ (~72) 예비고사 → 대학별 고사 실시 ▶ (~80) 예비고사 + 대학별고사 총점으로 합격 결정, 일부 대학은 예비고사만으로 선발 또는 고교 내신 반영

- ☐ (1981) 정부 주도로 대학 본고사 폐지 및 과외 금지('80.7.30. 교육조치)

학년도	주요 내용
1981	• 본고사 폐지, 과외금지, 내신성적과 예비고사로 선발 • 졸업정원제로 대학 입학정원 증대, 대량 미달 사태 발생

- ☐ (1982~1993) 정부는 대입 **예비고사**를 대입 **학력고사**로 개편하고, 대학의 입시 자율성 및 학생 사고력 제고를 위한 **논술(대학별 고사)** 신설

학년도	주요 내용
1982~1985	• 대학입학학력고사, 고교내신제 ▶ 학력고사 50%이상, 내신 30%이상으로 선발 ▶ 학력고사 점수로 대학 서열화, 고교간 내신 형평성, 객관식 문제로 인한 창의력 저하 및 대학 자율성 저해 비판
1986~1993	• 대학입학학력고사, 고교내신제 및 논술고사 ▶ 학생들의 사고력 제고를 위해 논술고사 신설(10% 이내 반영) ▶ 눈치작전 예방을 위해 선지원 후시험으로 변경

- (1994~2007) 정부는 **학력고사 폐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도입**하고, 대학은 수능 성적, 논술, 학생부 내신 등을 활용하여 학생 선발

학년도	주요 내용
1994~1996	• 대학수학능력시험, 고교 내신, 대학별 고사 ▶ 대학별로 대입전형요소 반영비율, 방법 자율 결정
1997~2001	• 대학수학능력시험, 학교생활기록부, 대학별 고사 ▶ 본고사 금지, 학교생활기록부 도입, 대학별 다양한 전형 실시
2002~2007	• 대학수학능력시험, 학교생활기록부, 대학별 고사 ▶ 선택형 수능 도입(2004~), 직업탐구 영역 신설

- (2007~2012) **참여정부** 말부터 입학사정관 지원사업을 통해 학생부 및 각종 외부 경합을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 도입** 유도

- 대입 자율화 정책에 따라 **대입전형 기본사항 수립 권한을 대학교협으로 이관**

- (2014~현재) 정부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입학사정관전형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개편, **논술·특기자전형 축소** 및 학생부 교과성적으로 학생을 정량평가하는 **학생부교과전형 신설** 유도

학년도	주요 내용
2014~	•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생부, 대학별 고사 ▶ 수시는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전형, 실기전형(특기자전형 포함) ▶ 정시는 수능전형, 실기전형 • 수능 시험 변화 ▶ 국·영·수 A/B형(2014), 영어 A/B형 폐지(2015), 국·수 A/B형 폐지 및 한국사(절대평가) 필수(2017), 영어 절대평가(2018)

- (2018~현재) 2022학년도 대입전형 개편방안 ('18.8.17.)에 따라 수능위주전형비율 30%이상 확대, 수능 문이과구분 폐지, 적성고사 폐지 등 추진

-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19.11.)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 내실화, 수능위주전형 확대, 사회통합전형 도입(법제화) 등 추진

학년도	주요 내용
2018~	• (대입전형 구조 개편) 정시 수능위주전형 비율 30% 이상 확대 권고 • (수능 개편) 2015 교육과정 취지(문·이과 구분 폐지), 국어·수학·직업탐구에 공통+선택 구조, 사회·과학탐구는 계열구분 없이 2과목 선택 - 제2외국어/한문 절대평가 적용 •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 (학생부 기재 개선) 수상경력 대입제공 개수(학기당 1개) 및 자율동아리 기재 개수(학년당 1개) 제한, 소논문 기재 금지, 기재격차 완화를 위해 분량 축소 및 연수 강화 등 ▶ (선발 투명성 강화) 자기소개서 개선(문항통합 및 글자수 제한), 교사추천서 폐지, 평가기준 및 선발결과 공개 확대, 다수(多數)에 의한 평가, 입학사정관 회피·제척 등 사전통제 및 입시부정 제재 ▶ (대학별고사 개선)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출신고교 블라인드 면접 도입 - 적성고사는 폐지

(자료: 교육부)